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4. 12. 21
- 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4. 12. 21
- 라. 상정일자 : 1994. 12. 29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이효선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 12200-3273(94. 11. 28)호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승인됨에 따라
-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조례 제정

나. 주요골자

- 기구 및 정원
 - 기구 : 1사업소 2개(관리계, 시설계)
 - 정원 : 40명(순증 38, 자체조정 2)
- 소각장 일반현황
 - 위치 :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-4번지
 - 규모
 - ┌ 부지면적 : 13,189㎡ : (3,993평)
 - └ 연 면 적 : 지하 1층, 지상 6층, 7,829㎡(2,370평)
 - 처리용량 : 200톤/일
 - 사 업 비 : 300억원
 - 사업기간 : 92. 12. 7 ~ 95. 2월말(예정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☐ 없음

나. 반대토론

☐ 없음

5. 심사결과

☐ 원안가결

6. 소수 의견 요지

☐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☐ 없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☐ 없음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

의안번호	333
의결 년 월 일	94. 12. 29 (제33회)

제출년월일 : 1994. 12. 13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 12200-3273(94. 11. 28)호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
-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조례 제정

2. 주요골자

○ 기구 및 정원

- 기 구 ————— 1사업소 2계(관리계, 시설계)
- 정 원 ————— 40명(순증 38, 자체조정 2)

○ 소각장 일반현황

- 위치 :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-4번지
- 규모

┌ 부지면적 : 13,189㎡(3,993평)
└ 연 면 적 : 지하 1층, 지상 6층, 7,829㎡(2,370평)

- 처리용량 : 200톤/일
- 사 업 비 : 300억원
- 사업기간 : 92. 12. 7 ~ 95. 2월말(예정)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생활쓰레기(중동신도시 포함)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사업소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-4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소각장 운전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
2. 소각장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
3. 폐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
4. 열생산공급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
5. 기타 소각장과 관련된 제반사항

제4조(소장)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4. 12. 26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4. 12. 26

라. 상정일자 : 1994. 12. 29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이효선)

가. 제안이유

-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94.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,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권한위임할 수 있어
-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시키고자 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○ 위임사무 ————— 4건(시장→구청장)

-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·징수 등(폐기물관리법 제63조)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등(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, 제42조)